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11-13

서 울 행 정 법 원

2002. 6. 20. 판결선고	⑨
2002. 6. 20. 원본영수	

제 1 4 부

판 결

사 건 2001구366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
원 고 참여연대

피 고 정보통신부장관

변 론 종 결 2002. 5. 30.

주 문

- 피고가 2001. 6. 13. 원고에게 한 1999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내 온 각종 출연금(각 업체별 출연내역)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-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원고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, 2001. 4. 11. 피고에게 이동전화요금의 타당성 산출을 위



한 원가 산정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 1항 기재 각 정보통신사업자별 출연금내역(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)의 공개를 청구하였고, 피고는 2001. 6. 13.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해당 사업자가 정보 공개를 반대하므로, 이 사건 출연금납입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(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)를 하였다.

2.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

가. 피고는,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(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) 7조 1항 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, 그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,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.

나.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.
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제6조 (정보공개청구권자)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7조 (비공개대상정보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7.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
가.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
나. 위법 ·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
다. 그러므로, 이 사건 정보가 위 법 7조 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에 관하여 본다.



(1)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정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데(예산회계법 7조 1항),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(33조)하고, 그 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전기통신기본법 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(34조 1항 2호)을 들고 있으며,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같은 법 5조 5항, 7항에 근거한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-69호 '기간통신사업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' 1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대상법인에게 일시출연금과 연도별출연금(연매출액의 3% 내지 1%)을 납부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이고, '정보화촉진기금운용·관리요령(정보통신부고시 제2001-118호)' 11조, 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업허가시 일시출연금과 매년 연도별 출연금을 납부 받아 왔는데, 2000년까지의 연도별출연금은 기간통신역무관련 매출액의 5% 내지 1%였으나 2001년부터 연도별출연금은 기간통신역무관련 매출액의 1%로 단일화되었다(갑 5호증, 을 1호증).

(2) 정보공개법 7조 1항 7호의 '영업상 비밀'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·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(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조 2항)에 한하지 않고, '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'라고 볼 것이나, 영업상 비밀이 비공개대상정보가 되기 위하여는 이를 공개하는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,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각 연도별 기간통신역무의 매출액의 규모 등이 추산될 수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11-13

라 매출액 등 기업회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, 갑 6호증,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, 대표적인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각 통신역무에 관한 매출액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,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을 2 내지 4호증의 1,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정보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.

따라서,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.

2002. 6. 20.

재판장 판사 성백현 _____

판사 김국현 _____

판사 나경원 _____